

【 9 】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4. 3.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제정이유

농가부담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임대농기계의 종류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안 제2조)
- 임대대상자 : 공동이용조직(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안제3조)
- 임대절차 및 선정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안 제4조)
- 임대계약 :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상 조건의 성실이행(안 제5조)
- 임대기간 : 1년단위를 원칙으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내구년수 까지 연장(안 제6조)
- 임대료 : 농기계가격, 내구년수등을 감안하여 결정 (안 제7조)
- 임작업대상농가 선정 : 임작업 대상농가 선정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지원 (안 제8조)
- 양도 및 대여금지 :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 금지(안 제9조)
- 임대농기계의 관리 :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료 수납대장을 기록·유지 (안 제10조)
- 안전관리 : 임대대상자의 농기계종합공제보험 가입 및 운전요원 및 보조

요원에 대한 농작업상해공제등 안전보험에 가입의무 (안 제11조)

- 0 관리·감독 :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임대대상자로 하여금 서류제출을 요구할수 있음 (안 제12조)
- 0 계약의 취소 : 계약 취소에 대한 명시(안 제13조)
- 0 임대료 감면 : 임대료 감면에 대한 명시 (안 제14조)
- 0 기계의 반환 :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여 반납 (안 15조)
- 0 운영경비 부담 : 임차인은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부담(안 16조)
- 0 변상책임 : 농기계 분실 및 훼손시 변상 명시 (안 17조)
- 0 기금의 설치 : 기금설치의 목적 명시(안 18조)
- 0 기금의 조성 : 기금의 조성방법 (안 19조)
- 0 기금의 운용관리(안 20조)
- 0 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21조)
- 0 기금의 운용심의는 심의회에서 함 (안 22조)
- 0 기금의 운용계획 :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안 23조)
- 0 회계관리 : 지방재정법 및 양주서제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안 24조)
- 0 회계공무원의 지정 운영(안 25조)
- 0 결산 및 보고 :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 (안 26조)
- 0 조례제정후 시행규칙 제정(안 27조)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기계임대

제2조 (임대기종) 이 조례에서 정한 임대농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류

제3조 (임대대상자) ①농기계임대대상자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동이용조직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이용조직이라 함은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제4조 (임대절차 및 선정) ①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양주시농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대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임대계약) ①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내구년수까지 연장한다.

제7조 (임대료 등) ① 농기계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년수, 지역의 임대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임차인이 농가의 영농을 대행할 때에는 지역 임대료 및 영농대행료를 기준으로 하여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 영농대행료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작업 대상농가 선정) 임차인은 임작업 대상 농가 선정시 사업취지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지규모 1ha미만의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
2.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 재배 농가
3. 시장이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

제9조 (양도 및 대여 금지)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채임대할 수 없다.

제10조 (임대농기계의 관리)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료 수납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시장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임차인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전 농기계종합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운전요원 및 보조요원에 대해서는 농작업상해공제 등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3.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한다.
4. 임대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감독) 시장은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농기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농기계관리대장 및 임작업관리대장
3. 사업결산내역서
4. 기타 시장이 관리·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제13조 (계약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에 위반한 때
 2. 재해복구 또는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기계류의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②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임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될 때
2.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기계의 반환) ①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고장유무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구년수가 지난 농기계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관내 농기계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을 받아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경비 부담)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변상책임)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가 분실 및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분실 및 훼손시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

제18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농기계임대사업 수익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각 호에서 정한 이외의 수익금

② 시장은 임대농기계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할 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에 보전할 수 있다.

제2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로 관리한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한다.

제2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임대농기계 구입하기 위한 자금
2.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가입비
3. 농기계의 운전 및 정비 관리에 대한 제비용

제22조 (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심의회에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기금운용관 : 농림축산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산유통담당 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되,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